

의안번호	2212429
의 퇴 인	정진욱 의원
회 답 일	2026. 1. 2.
추계번호	25A4663

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¹⁾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28조의3 신설 (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)	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조사할 증거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를 지정하고, 그 전문가로 하여금 침해의 증명이나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을 위한 증거확보에 필요한 조사(이하 이 조에서 “사실조사등”)를 하도록 결정할 수 있음(제1항) 법원은 제1항의 전문가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1인 이상을 지정할 수 있음(제2항) 1. 「법원조직법」 제54조의2·제54조의3에 따른 기술심리관이나 조사관 2. 「민사소송법」 제164조의2에 따른 전문심리위원 3. 「변호사법」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4. 「변리사법」 제3조에 따른 변리사의 자격을 가진 자 5.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 전문가는 사실조사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음 1. 상대방 당사자의 사무실, 영업소, 공장, 그밖의 장소출입, 상대방 당사자 관계인을 대상으로 하는 질문 및 자료의 열람 복사, 장치의 작동·계측 실험 및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 2. 상대방 당사자 등 관계인에 대한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3. 상대방 당사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사실조사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요구 4. 법원의 결정에 따른 소송 절차의 참여 및 각 당사자, 증인, 감정인 등의 소송관계인을 대상으로 하는 질문 5. 그 밖에 법원이 원활한 소송 절차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전문가는 법원이 지정한 기일 내에 조사결과를 기재한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,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사실을 비밀로 유지하여야 함(제5항) 사실조사등은 「민사소송법」의 증거보전 절차에도 활용할 수 있음(제13항)	재량규정

- 1) 개정안은 제128조의5를 신설하여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이 자료보전 등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대법원은 이러한 자료보전에 소요되는 비용의 경우 “소송비용”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출한바 해당 규정은 재정수반요인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함

「민사소송법」
제98조(소송비용부담의 원칙)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.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2	안 제132조제2항 (자료의 제출)	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(자료 목록 포함)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, 자료의 소지자가 제출을 거부할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제128조의3에 따른 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 등을 명할 수 있음	재량규정
3	안 제225조의2 신설 (자료보전명령 위반죄)	국내외에서 고의로 제128조의5제2항 ²⁾ 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	의무규정
4	안 제226조의2제2항 (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)	제128조의3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가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봄	의무규정
5	안 제227조제2항 및 제4항 신설 (위증죄)	이 법에 따라 선서한 당사자 아닌 진술인이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(제2항) 제2항에 따른 죄를 범한 진술인이 진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함(제4항)	의무규정
6	안 제229조의2제1항 (비밀유지명령 등 위반죄)	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8조의3제5항 후단에 따른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	의무규정
7	안 제232조제1항 신설 (과태료)	정당한 이유 없이 제128조의3에 따른 조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함 1. 법인의 경우: 1억원 이하 2. 법인의 임원·종업원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경우: 5천만원 이하	의무규정

2) 안 제128조의5(자료보전명령 및 효과) ②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소명하여 자료보전을 신청한 경우에 법원은 자료보전통지를 받은 상대방 당사자가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훼손하거나 사용할 수 없도록 자료보전을 명할 수 있다.

1. 자료보전명령의 대상이 될 자료를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
2. 자료보전을 명하지 않으면 신청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

Ⅱ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등 근거 규정
1	안 제128조의3 신설 (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132조제2항 (자료의 제출)	
3	안 제225조의2 신설 (자료보전명령 위반죄)	
4	안 제226조의2제2항 (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게 대한 공무원 의제)	
5	안 제227조제2항 및 제4항 신설 (위증죄)	
6	안 제229조의2제1항 (비밀유지명령 등 위반죄)	
7	안 제232조제1항 신설 (과태료)	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 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①전문가를 지정하여 증거와 관련된 조사를 하도록 하고, ②개정안의 내용에 수반하여 의무 위반에 따른 벌금 및 과태료를 신설하는 내용
- 개정안에는 재정지출의 증가와 재정수입의 증가 요인이 모두 있으며, 이를 조문 및 내용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
 - 재정지출의 증가는 전문가 사실조사 도입에 따른 인건비로 인하여 발생(안 제128조의3 및 제132조제2항)
 - 재정수입의 증가는 전문가 조사의 거부·방해·기피 등에 따른 과태료, 자료보전 및 비밀유지 명령 위반 등에 따른 벌금 수입으로 인해 발생
 - － 안 제225조의2, 제226조의2제2항, 제227조제2항 및 제229조의2제1항은 벌금형, 안 제232조제1항은 과태료 등을 정하고 있으므로,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벌금 또는 과태료를 징수할 경우 재정수입(세외수입)이 증가할 수 있음

[표] 개정안에 따른 재정지출 및 재정수입 증가 요인

구분	내용
재정지출 증가	· (제128조의3·제132조제2항) 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: 기술심리관·조사관 인건비
재정수입 (세외수입) 증가	· (제225조의2·제227조제2항·제229조의2제1항) 자료보전·비밀유지 명령 위반 및 위증죄에 따른 벌금 부과 · (제226조의2제2항) 개정안에 따라 사실조사를 수행하는 전문가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: 해당 법률에 따라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등의 경우 부당이득 환수 및 벌금·과태료 부과 · (제232조제1항) 전문가에 의한 증거조사를 거부·방해·기피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

- 개정안에 따른 순 재정부담은 재정지출의 증가액에서 재정수입의 증가액을 차감하여 산출할 수 있으나, 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와 의무 위반에 따른 벌금 부과 건수 및 액수 등을 알 수 없어 이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
- **재정지출 증가액**의 경우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을 관할하는 법원별³⁾ 기술심리관 및 조사관 증원 수요를 알 수 없으므로 소요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

- **안 제128조의3**에 따라 법원이 사실조사를 위해 전문가를 지정하는 경우 대법원의 의견에 따르면 해당 전문가의 자격이 기술심리관 및 조사관인 경우에만 공무원 인건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, 현 시점에서 법원이 지정할 전문가(기술심리관 및 조사관, 전문심리위원, 변호사, 변리사 등)의 자격을 합리적으로 가정할 수 없음
- * 비용추계를 위하여 증거조사를 위한 전문가의 자격을 기술심리관 및 조사관으로 한정하더라도, 각 법원별로 기존 인력으로 수행 가능한 부분과 신규 인력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하여 증원 필요한 기술심리관 및 조사관의 수를 산출하는 데 한계가 있음

- **재정수입 증가액**의 경우 개정안에 따라 금전 제재를 받게 될 의무 위반행위의 건수와 1건당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액을 바탕으로 산출될 것이나, 현재 이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정보가 부재하므로 구체적인 재정수입 증가 규모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
□ 이에 개정안에 따라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 대하여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를 도입하는 데 따른 재정지출과, 관련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벌금 및 과태료 등을 신설하는 데 따른 재정수입을 차감한 추가재정 소요(순 재정부담)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으므로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에 해당

- 참고로, 대법원은 전문가 증거조사 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기술심리관 및 조사관을 증원하는 데 따른 비용을 1억 8,000만원으로 추계하였음(추계기간: 2025년 단년도)

* [참고자료] 개정안에 따른 예산 소요 검토(대법원)

3) 「법원조직법」 등 관계 법률에 따라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, 부산지방법원, 대구지방법원, 대전지방법원, 광주지방법원, 수원지방법원, 특허법원의 7개 법원에서 관할

「법원조직법」

제28조의4(심판권) 특허법원은 다음의 사건을 심판한다.

1. 「특허법」 제186조제1항, 「실용신안법」 제33조, 「디자인보호법」 제166조제1항 및 「상표법」 제162조에서 정하는 제1심사건
2. 「민사소송법」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건의 항소사건
3. 다른 법률에 따라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김효진	권아영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효진	02-6788-4654	hjkim1991@na.go.kr

[참고자료] 개정안에 따른 예산 소요 검토(대법원)

(단위: 백만원)

항목	예산 소요	비고
기술심리관 또는 조사관 증원	180	· 90,195,545원 ¹⁾ × 2명 ²⁾ = 180,391,090원 1) 기술심리관 또는 조사관의 1인당 평균 연봉 2)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 접수 건수(연평균 346건), 1건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(40시간), 법원사무관 등의 연간 업무시간 (1,840시간) 등을 고려하여 가정

주: 1. 2025년을 기준으로 1년간 소요될 예산을 추정
2.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재판사무시스템 등 개편이 필요한 경우 추가 예산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음
자료: 대법원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정리